

1. 개정이유

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·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각·조퇴·외출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작성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무상황 관련 사유 미기재 근거 마련(안 [별지 제1호] 및 [별지 제2호])

- 지각·조퇴·외출 및 특별휴가(육아시간)의 복무처리 시 근무상황부에 사유 기재 생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

나. 오기사항 정정(안 제10조)

- 旣 삭제된 조항을 인용 중인 규정 문구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0. 23. ~ 12. 3.) 예정

총리령 제 호

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제9조”를 “제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) 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「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」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.	제10조(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) -- ----- <u>제8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근무상황부

(부서 : 직급 : 성명 :)

[illegible]

※ 비교

1. 종별은 휴가(연가·병가·공가·특별휴가)·지각·조퇴·외출·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
2. "부턴"란은 일·시·분을, "까지"란은 시·분을 기재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
3. 종별이 연가·지각·조퇴·외출 및 특별휴가(육아시간)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근무상황카드

(부서 : 직급 : 성명 :)

(앞쪽)

부서명 :

[illegible]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(뒤쪽)

[illegible]

※비고

1. 총별은 휴가(연가·병가·공가·특별휴가)·지각·조퇴·외출·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
2. "부터"란은 일·시·분을, "까지"란은 시·분을 기재하되,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
3. 총별이 연가·지각·조퇴·외출 및 특별휴가(육아시간)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